Sunshine GWANGYANG
광 양 시

시보는 공공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람	기관의 장

시 보

제8호 2023. 2. 22.(수)

고 시

광양시 고시 제2023-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---------- 1
광양시 고시 제2023-72호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 ---------- 2
광양시 고시 제2023-73호 광양시 도로구간[1차 종속도로] 설정 고시 ---------- 4
광양시 고시 제2023-76호 광양국가산업단지(명당3지구) 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 6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3-394호 「광양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안」 행정 예고 ---------- 24
광양시 공고 제2023-439호 공시송달공고 ---------- 35

회람										

▶발행 : 광양시 ▶편집 : 홍보소통실 (☎797-2323, 행정2713)

광양시 고시 제2023-69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2월 22일

광 양 시 광양시장인

가. 허가내용

하천의 명칭		국가하천(섬진강)
점용자	주소	광양시 시청로 33
	성명	광양시장(관광과)
점용지역	위치	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455 외 4필지
	면적	74,000㎡
점용목적		토지의 점용
점용내용		제22회 광양 매화축제
점용기간		2023. 3. 1. ~ 2023. 3. 31.

나.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안전총괄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(☎061-797-27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광양시 고시 제 2023 - 72 호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2. 22.

광 양 시 장

○ 도로명주소

구 분	고 시 대 상	고시조서	비 고
도로명주소 (건물번호) 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8로 56 외 8건	별지참조	
	아 래 빈 칸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(☎797-338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3. 2. 22. 고시 후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도로명은「도로명주소법」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고시 대상

연번	업무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 사유
계	건물번호 부여 9건					
1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29,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370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8로 56	20230222	20190307	율촌산업단지 명칭 인용 도로명 부여
2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662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본정1길 18-1	20230222	20081001	옛 지명에서 인용, 일련번호식 부여
3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384, 1335, 1385, 1430	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303 (황길동)	20230222	20090902	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인용
4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394-5, 황금동 1119, 1120	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91 (황길동)	20230222	20090902	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인용
5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414-10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73-1	20230222	20090703	순천시와 광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양시 명칭에서 인용
6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33-2, 조령리 870-9, 신룡리 205-29, 742-10, 742-11	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해랑1길 30	20230222	20200603	사업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
7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818	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청평길 37	20230222	20081001	옛 지명에서 인용
8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83-2	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65	20230222	20090421	행정리명에서 인용
9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607-2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길 221-46	20230222	20081001	법정리명에서 인용

광양시 고시 제2023-73호

광양시 도로구간(1차 종속도로) 설정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2월 22일

광 양 시 장

1. 고 시 일: 2023. 2. 22.(수)
2. 고시방법: 시보, 시홈페이지 등
3. 고시내용: 도로구간(1차 종속도로) 설정(붙임조서 참조) 1건
4.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(www.gwangyang.go.kr)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(☎061-797-338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도로구간 설정 조서(도면 포함) 1부. 끝.

▣ 도로구간 설정 조서

연번	도로명	도로 구분	행정 구역	도로구간					기초간격 (m)	기초번호		도로명 부여사유	비 고
				시작지점	종료지점	중심선	연장 (m)	폭 (m)		시작	끝		
1	신재로 (1차종속도로)	로	옥룡면	옥룡면 죽천리 697-4	옥룡면 죽천리 701-1	도면 참조	195	3	20	902-1	902-20	신재 최산두 선생의 호에서 인용	

▣ 도로구간(중심선) 위치도

광양시 고시 제2023 - 76호

광양국가산업단지(명당3지구) 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

광양시 고시 제2020-267호(2020. 7. 15.)된 광양국가산업단지(명당3지구)내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및 내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항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4,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2월 22일

광 양 시 장

1. 산업단지의 명칭·위치 면적

○ 사업의 명칭 :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조성사업

○ 위 치 : 광양시 태인동 일원

○ 면 적 : 461,499 ㎡

2. 산업단지의 지정목적

○ 광양만권 개발계획 및 광양제철소 연관 산업단지와 연계한 공장용지를 공급함으로써 광양만권의 위상변화에 대응하고 광양시의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

○ 광양국가산업단지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명당3지구를 도로, 녹지, 상하수도, 항만, 용수, 철강 등 공공시설계획과 기간시설 및 배후도시건설 등의 계획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3.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: 광양시장
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

○ 개발기간 : 2016. 11. ~ 2020. 12.(준공)

○ 개발방법 : 공영개발

5. 주요유치업종

○ 당초 : 비금속광물제조업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,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, 복합업종

○ 변경 : 제조업(제한업종 : C17, C19, C20, C23, C28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,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, 복합업종

5의2.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[변경]

구 분			분류코드	면 적(㎡)	구성비(%)	
합 계				286,470.9	100.0	
당초		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	C23	84,562.2	29.5	
변경	①	제조업 (업종분류코드 내 제조업 가능)	제한업종 C17, C19, C20, C28	84,562.2	29.5	
당초	②	복합업종	C23, C24, C25, C29	76,755.5	26.8	
변경	③	복합업종	C23, C24, C25, C29	10,365.6	3.6	
		제조업 (업종분류코드 내 제조업 가능)	제한업종 C17, C19, C20, C23, C28	66,389.9	23.2	
당초		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	D35	33,373.8	11.7	
변경	④	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	D35	8,374.3	2.9	
변경	⑤	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	제한업종 C17, C19, C20, C23, C28	24,999.5	8.7	
		제조업 (업종분류코드 내 제조업 가능)				
당초		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	H52	91,779.4	32.0	
변경	⑥	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	H52	91,779.4	32.0	
		제조업 (업종분류코드 내 제조업 가능)	제한업종 C17, C19, C20, C23, C28			

주) 제한업종 : 유해물질 배출량이 높은 업종(C17, C19, C20, C23, C28)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함.
입주업종별 제한물질에 대한 규정(별표1.)을 참고하여 업종별 제한 물질 배출업종은 입주불가

6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

1) 토지이용계획표 [변경] : 개발계획(명당3지구) 변경 : 완충저류지설 조성(중복결정)

구 분	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변경후	
합 계			461,499.0	–	461,499.0	100.0	–	100.0	
산업시설	소 계		286,471.0	–	286,470.9	62.0	–	62.0	
	산업시설용지		282,657.0	–	282,656.9	61.2	–	61.2	
	존치시설		3,814.0	–	3,814.0	0.8	–	0.8	
지원시설	소 계		17,326.0	–	17,325.7	3.8	–	3.8	
	상업용지		1,431.0	–	1,430.8	0.3	–	0.3	
	생산지원시설		15,895.0	–	15,894.9	3.5	–	3.5	
공공시설	소 계		157,702.0	–	157.702.4	34.2	–	34.2	
	공 원	체육공원	25,464.0	–	25,464.6	5.5	–	5.5	
		소공원	7,914.0	–	7,914.2	1.7	–	1.7	
	녹 지		35,676.0	–	35,676.0	7.7	–	7.7	
	주차장		6,703.0	–	6,702.7	1.5	–	1.5	
	도 로		81,945.0	–	81,944.9	17.8	–	17.8	
	*저류시설		–	증) (3,290)	(3,290)	–	–	–	

주) 기정 : 명당3지구 개발계획 변경, 광양시 고시 제2020-267호(2020.07.15.)

* 저류시설 : 소공원25(도시관리계획 소공원174) 부지내 지하구조물로 설치 예정으로,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중복결정

2) 주요기반시설계획(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) : 다음

■ 광양시 도시관리계획(명당3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표시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20	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태인동 1776번지 일원	461,499	-	461,499	-	

2 용도지역·지구 결정 조서
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461,499	-	461,499	100.0	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2,096	-	2,096	0.5	
공업지역	준 공 업 지 역	407,044	-	407,044	88.2	
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52,359	-	52,359	11.3	

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1. 교통시설 : 변경없음

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		
기정	중로	2	146	15	국지도로	1,321	19호 광장	중로1-73호	일반도로		광양 41호 (05.07.05)	명당3지구
기정	중로	2	147	18	집산도로	95	중로1-103호	중로3-61호	일반도로		광양 204호 (16.11.23)	명당3지구
기정	중로	2	148	18	집산도로	43	중로1-106호	중로2-146호	일반도로		광양 204호 (16.11.23)	명당3지구
기정	중로	2	149	15	국지도로	175	19호 광장	중로1-106호	일반도로		광양 1981호 (18.11.13)	명당3지구
기정	중로	2	161	15	국지도로	83	중로2-143호	중로2-146호	일반도로		광양 1981호 (18.11.13)	명당3지구
기정	중로	3	175	12	국지도로	124	중로2-147호	중로2-150호	일반도로		광양 1981호 (18.11.13)	명당3지구
기정	중로	3	176	12	국지도로	191	중로2-144호	중로2-150호	일반도로		광양 1981호 (18.11.13)	명당3지구
기정	소로	3	667	6	국지도로	110	중로2-147호	중로3-175호	일반도로		광양 1981호 (18.11.13)	명당3지구
기정	소로	3	668	6	국지도로	156	중로2-150호	중로3-176	일반도로		광양 1981호 (18.11.13)	명당3지구

2) 주 차 장

가)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	3개소	6,702.7	-	6,702.7		
변경	178	주차장	태인동 1820번지	2,780.0	-	2,780.0	광양 204호 (16.11.23)	
변경	209	주차장	태인동 1825번지	1,624.0	-	1,624.0	광양 1981호 (18.11.13)	
변경	210	주차장	태인동 1847번지	2,298.7	-	2,298.7	광양 1981호 (18.11.13)	

2. 공간시설 : 변경없음

1) 녹 지

가)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	12개소	35,676.0	–	35,676.0		
기정	129	녹지	완충녹지	태인동 1786번지	9,858.0	–	9,858.0	광양 204호 (16.11.23)	
기정	130	녹지	완충녹지	태인동 1779번지	9,338.6	–	9,338.6	광양 204호 (16.11.23)	
기정	131	녹지	연결녹지	지번 없음	3,270.1	–	3,270.1	광양 204호 (16.11.23)	
기정	132	녹지	연결녹지	태인동 1816번지	2,954.3	–	2,954.3	광양 204호 (16.11.23)	
기정	133	녹지	연결녹지	태인동 1802번지	3,526.0	–	3,526.0	광양 204호 (16.11.23)	
기정	134	녹지	연결녹지	태인동 1786번지	1,298.2	–	1,298.2	광양 204호 (16.11.23)	
기정	142	녹지	연결녹지	태인동 1812번지	2,696.7	–	2,696.7	광양 1981호 (18.11.13)	
기정	143	녹지	연결녹지	태인동 1875번지	681.6	–	681.6	광양 1981호 (18.11.13)	
기정	144	녹지	연결녹지	태인동 1814번지	460.2	–	460.2	광양 1981호 (18.11.13)	
기정	145	녹지	연결녹지	태인동 1815번지	309.1	–	309.1	광양 1981호 (18.11.13)	
기정	146	녹지	연결녹지	태인동 1813번지	707.0	–	707.0	광양 1981호 (18.11.13)	
기정	147	녹지	연결녹지	태인동 1877번지	576.2	–	576.2		

3) 공 원

가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	2개소	33,378.8	–	33,378.8		
변경	174	공원	소공원	태인동 1878번지	7,914.2	–	7,914.2	광양 204호 (16.11.23)	명당3지구 완충저류시설10 중복결정
변경	181	공원	체육공원	태인동 1788번지	25,464.6	–	25,464.6	광양 1981호 (18.11.13)	

나) 공원 조성계획 조서

① 174호 공원

시설구분	번호	시설명	위치	부지면적(㎡)			비율	규모 수량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	
총 계				7,914.2	–	7,914.2	100.0		
시 설 소 계				1,169.0	–	1,169.0	14.8%	4기	14.8%
도로 및 주차장	1	도로 및 주차장	공원內	1,004.0	–	1,004.0	12.7%		
휴양시설	2	휴양시설	공원內	165.0	–	165.0	2.1%		
	①	사각파고라	공원內	–	–	–	–	1기	
	②	평의자	공원內	–	–	–	–	3기	
녹 지			공원內	6,745.2	–	6,745.2	85.2%		85.2%

② 181호 공원

시설 구분	번호	시설명	위치	부지면적(㎡)			건축면적(㎡)		규모 수량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바닥면적	연면적		
총 계				25,464.6	–	25,464.6	9.7	9.7		
공원시설				11,939.0	–	11,939.0	9.7	9.7		시설율:46.9%
도로	소 계			1,279.0	–	1,279.0				
	1-1	보행자도로	공원內	492.0	–	492.0				
	1-2	보행자도로	〃	277.0	–	277.0				
	1-3	보행자도로	〃	163.0	–	163.0				
	1-4	보행자도로	〃	133.0	–	133.0				
	1-5	보행자도로	〃	78.0	–	78.0				
	1-6	보행자도로	〃	136.0	–	136.0				
운동 시설	소 계			10,639.0	–	10,639.0				
	2-1	축구장	공원內	8,970.0	–	8,970.0			1개소	
	2-2	풋살장	〃	1,125.0	–	1,125.0			1개소	
	2-3	족구장	〃	544.0	–	544.0			1개소	
휴양 시설	소 계			21.0	–	21.0	9.7	9.7		
	3-1	파고라	〃	18.0	–	18.0	9.7	9.7	1개소	
	3-2	벤치	〃	3.0	–	3.0			1EA	
녹지시설				13,525.6	–	13,525.6				녹지율:53.1%
녹지	소 계		공원內	13,525.6	–	13,525.6				

4) 방재시설 : 신설

가) 방재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구분	기정	변경	변경후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10	유수지 (완충저류시설)	태인동 1878번지	지하	–	증)3,290	3,290		명당3지구 소공원174 중복결정

나) 방재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0	유수지	○ 유수지(완충저류시설) 신설 - 3,290㎡	○ 수질오염 사고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시 유해물질의 방류수역 직유입 차단 및 강우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

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(변경)결정 조서 : 변경

1. 산업시설용지 : 변경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㎡)	획 지		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합 계		282,656.9		282,656.9	-	282,656.9	필지분할 및 획지 내 필지공동개발 허용
A	A1	19,543.2	1	9,528.7	-	9,528.7	
			2	9,491.5	-	9,491.5	
			3	523.0	-	523.0	
	A2	37,580.5	1	8,193.3	-	8,193.3	
			2	9,429.1	-	9,429.1	
			3	10,429.2	-	10,429.2	
			4	9,528.9	-	9,528.9	
	A3	30,841.7	1	9,528.0	-	9,528.0	
			2	5,878.1	-	5,878.1	
			3	4,893.0	-	4,893.0	
			4	5,160.8	-	5,160.8	
			5	5,381.8	-	5,381.8	
	A4	84,562.2	1	3,305.7	-	3,305.7	
			2	10,552.8	-	10,552.8	
			3	10,249.0	-	10,249.0	
			4	14,449.1	-	14,449.1	
			5	12,089.9	-	12,089.9	
			6	12,191.5	-	12,191.5	
			7	14,276.4	-	14,276.4	
			8	7,447.8	-	7,447.8	
	A5	76,755.5	1	10,365.6	-	10,365.6	
			2	10,365.8	-	10,365.8	
			3	11,561.0	감)1,983.9	9,577.1	
			4	9,819.6	증)4,141.8	24,135.1	
			-	10,173.7			
			5	12,206	감)2,157.9	10,048.1	
			6	12,263.8	-	12,263.8	
	A6	33,373.8	1	8,374.3	-	8,374.3	
			2	8,251.5	-	8,251.5	
			3	8,373.5	-	8,373.5	
			4	4,187.3	-	4,187.3	
			5	4,187.2	-	4,187.2	

2. 지원시설용지(B1-1 : 타사업, B2~5 : 금회시행) : 변경없음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
합 계		15,894.9		15,894.9	
B	B2	2,709.7	1	462.1	필지분할 및 획지 내 필지공동개발 허용
			2	505.2	
			3	480.4	
			4	430.0	
			5	417.2	
			6	414.8	
			1	418.0	
	B3	3,692.0	2	441.1	
			3	441.0	
			4	493.0	
			5	418.8	
			6	502.5	
			7	509.0	
			8	468.6	
	B4	3,965.6	1	362.8	
			2	373.9	
			3	368.9	
			4	368.8	
			5	357.8	
			6	369.0	
			7	355.8	
			8	369.0	
			9	368.9	
			10	334.8	
			11	335.9	
	B5	5,527.6	1	380.2	
			2	442.2	
			3	466.2	
			4	481.2	
			5	475.2	
			6	476.3	
			7	472.3	
			8	297.9	
			9	344.0	
			10	327.2	
			11	329.9	
			12	334.1	
			13	356.0	
			14	344.9	

3. 상업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
합 계		1,430.8		1,430.8	필지분할 및 획지 내 필지공동개발 허용
C	C1	706.0	1	706.0	
		724.8	2	724.8	

4. 주차장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
합 계		6,702.7		6,702.7	-
D	D1	2,780.0	1	2,780.0	
	D2	1,624.0	1	1,624.0	
	D3	2,298.7	1	2,298.7	

5. 공원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	
합 계		33,378.8		33,378.8	-
E	E1	7,914.2	1	7,914.2	
	E2	25,464.6	1	25,464.6	

6. 녹지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	
합 계		35,676.0		35,676.0	-
F	F1	9,338.6	1	9,338.6	
	F2	11,156.2	1	11,156.2	
	F3	3,526.0	1	3,526.0	
	F4	2,954.3	1	2,954.3	
	F5	3,270.1	1	3,270.1	
	F6	2,696.7	1	2,696.7	
	F7	681.6	1	681.6	
	F8	707.0	1	707.0	
	F9	460.2	1	460.2	
	F10	309.1	1	309.1	
	F11	576.2	1	576.2	

7. 존치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
합 계		3,814.0		3,814.0	-
G	G1	3,814.0	1	3,814.0	

5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: 변경

1. 산업시설용지 : 변경

가. 당초 :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(H52)

변경 :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(H52), 제조업(제한업종 : C17, C19, C20, C23, C28)

1) 기정

도면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A	A1(1~3), A2(1~4), A3(1~5)	용 도	권장용도	• 「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」에 의거 중분류 (H운수및창고업)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– H52 :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
		건폐율		• 7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)
		용적률		• 40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적용)
		높 이		–
		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	–

2) 변경

도면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A	A1(1~3), A2(1~4), A3(1~5)	용 도	권장용도	• 「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」에 의거 중분류(H운수및창고업) 및 (C제조업 ; 제한업종 제외)으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– H52 :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– C : 제조업 ※ 제한업종 – C17 :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– C19 :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– C20 :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 – C23 :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– C28 : 전기장비 제조업 ※ 입주업종별 제한물질에 대한 규정(별표1.)을 참고하여 업종별 제한 물질 배출업종은 입주불가
		건폐율		• 7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)
		용적률		• 40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적용)
		높 이		–
		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	–

나. 당초 :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(C23)

변경 : 제조업(제한업종 : C17, C19, C20, C28)

1) 기정

도면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A	A4(1~8)	용 도	권장용도	• 「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」에 의거 중분류 (C제조업)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– C23 :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
		건폐율		• 7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)
		용적률		• 40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적용)
		높 이		–
		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	–

2) 변경

도면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A	A4(1~8)	용 도	권장용도	• 「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」에 의거 중분류 (C제조업 ; 제한업종 제외)으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– C : 제조업 ※ 제한업종 – C17 :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– C19 :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– C20 :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 – C28 : 전기장비 제조업 ※ 입주업종별 제한물질에 대한 규정(별표1.)을 참고하여 업종별 제한 물질 배출업종은 입주불가
		건폐율		• 7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)
		용적률		• 40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적용)
		높 이		–
		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	–

다. 복합업종 : 변경

-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C23), 1차금속 제조업(C24), 금속가공제품제조업(C25), 기계 및 장비제조업(C29), 제조업(제한업종 : C17, C19, C20, C23, C28) : 변경

1) 기정

도면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A	A5(1~7)	용 도	권장용도	• 「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」에 의거 중분류(C제조업)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– C23 :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– C24 : 1차금속 제조업 – C25 :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– C29 : 기계 및 장비 제조업
		건폐율		• 7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)
		용적률		• 40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적용)
		높 이		–
		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	–

2) 변경

도면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A	A5(1)	용 도	권장용도	• 「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」에 의거 중분류(C제조업)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– C23 :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– C24 : 1차금속 제조업 – C25 :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– C29 : 기계 및 장비 제조업
		건폐율		• 7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)
		용적률		• 40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적용)
		높 이		–
		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	–
	A5(2~6)	용 도	권장용도	• 「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」에 의거 중분류(C제조업 ; 제한업종 제외)으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– C : 제조업 ※ 제한업종 – C17 :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– C19 :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– C20 :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 – C23 :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– C28 : 전기장비 제조업 ※ 입주업종별 제한물질에 대한 규정(별표1.)을 참고하여 업종별 제한 물질 배출업종은 입주불가
		건폐율		• 7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)
		용적률		• 40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적용)
		높 이		–
		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	–

라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(D35), 제조업(제한업종 : C17, C19, C20, C23, C28) : 변경

1) 기정

도면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A	A6(1~5)	용 도	권장용도	• 「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」에 의거 중분류(D전기,가스,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)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– D35 :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
		건폐율		• 7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)
		용적률		• 40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적용)
		높 이		–
		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	–

2) 변경

도면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A	A6(1)	용 도	권장용도	• 「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」에 의거 중분류(D전기,가스,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)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– D35 :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
		건폐율		• 7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)
		용적률		• 40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적용)
		높 이		–
		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	–
	A6(2~5)	용 도	권장용도	• 「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」에 의거 중분류(D전기,가스,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) 및 (C제조업 ; 제한업종 제외)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– D35 :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4 – C : 제조업 ※ 제한업종 – C17 :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– C19 :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– C20 :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 – C23 :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– C28 : 전기장비 제조업 ※ 입주업종별 제한물질에 대한 규정(별표1.)을 참고하여 업종별 제한 물질 배출업종은 입주불가
		건폐율		• 7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)
		용적률		• 40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적용)
		높 이		–
		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	–

2. 지원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B	B2(1~6), B3(1~8), B4(1~11), B5(1~14)	용 도	허용용도	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 시행령 별표14에 의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4에 의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중 - 제1, 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- 판매시설 - 의료시설(격리병원 제외) -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- 업무시설(오피스텔만 해당) - 창고시설 -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- 자동차관련시설 - 방송통신시설 - 발전시설 - 교육연구시설(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) - 수련시설 -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·회의장·전시장 -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)
		건폐율		• 7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)
		용적률		• 40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적용)
		높 이		-
		배 치		•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
		형 태		•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
		색 채		•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배색으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 권장
		건축선		• 2m 건축선 후퇴 권장

3. 상업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C	C1(1~2)	용 도	허용용도	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 시행령 별표9에 의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별표9에 의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
		건폐율		• 8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)
		용적률		• 1,30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적용)
		높 이		-
		배 치		•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
		형 태		•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
		색 채		•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배색으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 권장
		건축선		• 2m 건축선 후퇴 권장

4. 주차장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D	D1(1), D2(1), D3(1)	용 도	허용용도	•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※ 부대시설(관리사무소, 휴게소, 공중변소, 간이매점 및 자동차 장식품판매점, 노외주차장 관리·운영 상 필요한 편의시설) • 주차전용 건축물 ※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% 이상일 것(다만, 주차장외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허용하고 허용되는 용도를 설치한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70%이상이어야 함)
		건폐율		• 7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)
		용적률		• 40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적용)
		높 이		-
		배 치		• 노외주차장으로 사용시 도로변의 시각적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 설치
		형태, 색채, 건축선		• 3m 건축선 후퇴

5. 공원・녹지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E	E1(1), E2(1)	용 도	지정용도	• 『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』의 도시공원
			불허용도	•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	• 2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)
		용적률		• 10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적용)
		높이, 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	–

나. 녹 지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F	F1(1), F2(1), F3(1), F4(1), F5(1), F6(1), F7(1), F8(1), F9(1), F10(1), F11(1)	용 도	지정용도	• 『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』의 녹지
			불허용도	•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	• 20% 이하
		용적률		• 100% 이하
		높이, 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	–

6. 존치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G	G1	용 도	권장용도	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4에 의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
		건폐율		• 7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)
		용적률		• 400% 이하(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적용)
		높 이		–
		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	–

7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: 변경없음

가. 교통처리

구 분	계 획 내 용
차량의 진출입	• 차량의 진·출입은 그 필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상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차량 진출입 및 출입구 지정사항을 준수 • 산업시설용지 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정형화되도록 설치 • 지원시설용지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연접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할 것을 권장
주차장 설 치	• 각 필지는 「주차장법」 및 「광양시 주차장 조례」에 의한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 설치 • 광양국가산업단지(명당3지구)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 및 설치
보행동선	• 대상지내 전체의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최소폭원(2.0m)이상 확보 •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

나.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

-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지침은 지원시설용지에 적용토록 하며, 기타 공공시설용지의 건축물에도 준용
- 본 지구에서의 옥외광고물은 이 지침에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(단, 본 지침의 제시내용이 해당법령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름)
-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1개를 원칙으로 함(단,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 설치는 불가)
-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, 주소, 상호, 상표,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음
- 현수막,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 가능

7.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: 해당없음

8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·주소 : 생략

9. 승인조건 : 게재 생략

10.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는 광양시청 산단과(☎061-797-2932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※ 별표 1. 입주업종별 제한물질

- 각 입주허용 업체 중 아래와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종은 입주제한

업 종	업종별 제한 물질
식료품 제조업(C10)	스티렌, 암모니아
음료 제조업(C11)	-
담배 제조업(C12)	-
섬유제품 제조업 ; 의복제외(C13)	-
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(C14)	-
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(C15)	-
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(C16)	포름알데히드
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	크롬
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C21)	염화수소, 암모니아, 벤젠
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	스티렌, 포름알데히드, 카드뮴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)	스티렌, 암모니아
1차 금속 제조업(C24)	시안화수소, 황화수소, 벤젠, 카드뮴, 비소
금속 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(C25)	스티렌, 염화수소, 암모니아, 포름알데히드
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	염화수소, 암모니아, 벤젠, 포름알데히드
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	-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	납, 니켈, 크롬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	스티렌
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)	스티렌
가구 제조업(C32)	스티렌
기타 제품 제조업(C33)	스티렌, 니켈, 크롬
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C34)	-

광양시 공고 제2023-394호

「광양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안」 행정 예고

「광양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.

2023. 2. 20.

광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:「광양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」
2. 제정 목적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장비 운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3. 주요 내용
   - ○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~2조)
   - ○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기준(안 제3조)
   - ○ 사용자 준수사항(안 제4조)
   - ○ 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(안 제5조)
   - ○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기준(안 제6조)
   - ○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(안 제7조)
   - ○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 관리(안 제8조)
   - ○ 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(안 제9조)
   - ○ 영상·음성기록 증거물 작성(안 제10조)
   - ○ 사용자 교육(안 제11조)
   - ○ 기타(안 제12조)

4. 행정예고기간: 2023. 2. 20. ~ 2023. 3. 12. (20일간)

5. 의견 제출

○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3월 12일까지 의견서를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

1) 주소: (57785)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(중동)

2) 전화: 061-797-2248

3) 팩스: 061-797-2576

4) 전자우편: minsj@korea.kr

라. 의견제출서: [붙임1] 참조

※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【붙임 1】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	
	주소	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 견	
	기 타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 의 사 항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광양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안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, 기준, 절차 및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휴대용 보호장비”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.
2. “휴대용 영상기록 장비”란 민원 처리 담당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가 민원인의 폭언 · 폭행 등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(음성을 포함한다)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.
   가.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
   나. FullHD급(1920×1080) 해상도 이상
   다. 녹화 시야각 120˚ 이상
   라. 영상기록의 파일 보안
3. “휴대용 음성기록 장비”란 사용자가 민원인의 욕설, 협박, 성희롱 등에 대한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음성의 녹음 및 음성기록의 파일 보안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.
4. “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”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 · 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부서에서 지정한 정보처리 시스템을 말한다.

제3조(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기준) 사용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민원인이 사용자에게 욕설, 협박,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

2. 민원인이 사용자를 위협하거나 폭행,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(이하 “위법행위 등”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
가.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,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
나.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

제4조(사용자 준수사항 등) ①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고지. 다만,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다.
2.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 · 저장
3.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의 저장 · 전송 금지
4.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기록의 임의 편집·삭제 금지

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를 즉시 제5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해야 한다.

1. 영상 · 음성의 녹화 · 녹음,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
2.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으로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확인
3.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 · 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

제5조(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)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(이하 “관리책임자”라 한다)는 휴대용 보호장비 및 시스템을 운용 · 관리하는 사람으로 다음

각 호와 같다.

1. 정: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부서의 장

2. 부: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부서의 주무팀장
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부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담당하며, 별지 제1호서식의 휴대용 영상 · 음성기록 장비 입출고 현황대장을 작성 · 관리해야 한다.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출고 내역을 출력해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6조(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)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

2.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

제7조(휴대용 보호장비 관리) ①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휴대용 영상·음성기록 장비 등록대장을 작성 · 관리해야 한다.

②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.

③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분실하거나 빼앗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8조(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 관리)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② 관리책임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, 고발 등의 법적조치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, 법적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. 다만, 법적조치를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

하고자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③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,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물 관리 현황을 작성 · 관리해야 한다.

④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,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.

⑤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·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제9조(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)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「(개인정보보호위원회)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44조를 준용한다.

제10조(영상·음성기록 증거물 제작 등) ① 사용자는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,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, 장소, 사용자 성명,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 · 음성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.

제11조(교육) ①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법, 사용지침,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휴대용(영상·음성)기록 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

연번	일자	일련번호	사용자		용도	출고시각	담당자확인	입고시각	담당자확인
			직급	성명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휴대용(영상 · 음성)기록 장비 등록대장

연번	일련번호	모델명	제작회사	제작번호(S/N)	등록일	관리책임자		해지일	관리책임자		비고(해지사유 등)
						부	정		부	정	

[별지 제3호서식]

증거물 관리 현황

연번	관리번호	영상기록 관리					관리책임자		비고
		기록일시	기록장소	민원처리 담당자	삭제일	삭제자	부	정	

연번	관리번호	음성기록 관리					관리책임자		비고
		기록일시	기록장소	민원처리 담당자	삭제일	삭제자	부	정	

광양시 공고 제2023 - 439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구「임대주택법」 제31조, 같은법 제30조제6항 규정에 따라, 임대사업자에게『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제출 촉구(1차)』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어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2월 22일

광 양 시 장

1. 공고내용 :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제출 촉구
2. 법적근거 : 구「임대주택법」제31조, 같은법 제30조제6항
3. 공고기간 : 2023. 2. 22. ~ 2023. 3. 14.(20일간)
4. 공고장소 : 광양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
5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공공건설임대주택 소재지	임대사업자	송달내용	반송주소	반송사유
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844번지(서산길 5)	홍***주식회사	구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30조제6항에 따른 특별 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제출 촉구(1차)	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, B-401호(충무공동)	수취인 불명

6. 유의사항

○ 위 내용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구「임대주택법」제31조,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규정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제출을 1차 촉구합니다.

○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(☎061-797-287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